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9월 16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각종 보조금 지원 조례, 투명성 개관성 위해 개정 필요

최선 의원(민주당/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금번 172회 강북구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소속되어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작성 등 조례에 명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를 동의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수정하여 가결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구의 각종 기금 심의위원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구에는 기금설치조례 이외에도 우리구의 사회단체나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설치되어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규모등을 심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민간이전경비 중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매년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 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등 공무원이 4명, 구의원이 2명 그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정수를 1/3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공무원중 한 명을 줄이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한 명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 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예를 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이외에도 조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각종 '보조금 지원조례'의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동수 기자 ods0012000@hanmail.net〉

서울포스트 5면

최선 의원 ... '보조금 지원조례' 조례의 개정 이루어져야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은 기금 설치조례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조례에 위원회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1/3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금번 172회 강북

구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소속되어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작성 등 조례에 명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본의원도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를 동의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수정하여 가결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구의 각종 기금 심의위원회가 더욱 공정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고 했다.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정수를 1/3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공무원중 한 명을 줄이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한 명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 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이외에도 조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각종 '보조금 지원조례'의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